

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,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내용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현행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16 및 제22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최 기 도)